

2025학년도 2학기 장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안내

1.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: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기회와 현장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

2. 프로그램 종류

기간	프로그램명	주 관	비 고
2학기	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	부산 경제진흥원	-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완료
2학기	장기 표준현장실습	동아대학교	-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진행

※ 예산 소진시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 조기 종료

3.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일정

구분	기간	비고
실습기관 모집	2025.7.28.(월) ~ 2025.8.14.(목)	학과 사무실 제출 (붙임2)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※ 제출 기한 엄수
실습생 모집	2025.7.28.(월) ~ 2025.8.14.(목)	행정 처리 상 제출 기간 경과 시, 추가 기업 및 학생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
지도교수 및 기업 매칭	2025.8.18.(월) ~ 2025.8. 22.(금)	학과 자체 진행
설명회(사전교육)	2025.8.25.(월) ~ 2025.8. 28.(목) 예정 ※ 추후 별도 안내	필수 (오프라인) ※ 미이수시 학점 인정 불가
실습기간	2025.9.1.(월) ~ 2025.12.19.(금)	실습기간 내 3개월 또는 4개월 2025.12.19.(금) 실습 종료일

※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 기간 동안만 진행

※ 원활한 학점인정 업무를 위해 실습기간은 개강 후부터 기말시험 전까지로 기간설정 권장

4. 장기 표준현장실습생 자격 및 의무사항

가. 장기 표준현장실습생 자격 조건

- 1) **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참여학과(부) 재학생**
- 2)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RISE 사업 추진단 참여학과 재학생(외국인 유학생 포함)
- 3) 참여학기 기준 졸업유예자, 학기초과자, 휴학생 참여 불가
- 4) 참여학기 기준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
 - 가)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
 - 나) 현장실습 종료일 준수 및 실습 서류를 기한 내 제출 가능한 경우여야 함
- 5) 다전공(복수, 연계, 자기설계연계, 부전공) 및 융합전공 이수자는 참여 불가
※ 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은 다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자 참여 가능
- 6) 해당 학기에 도전학기제, 연구학점제 이수자는 참여 불가
- 7) 장기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이수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 가능하여야 함

나. 장기 표준현장실습생 의무사항

- 1) 실습 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.
- 2) 실습을 통해 알게 된 실습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.
- 3) 현장실습 도중 문제가 발생 시 실습 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.
- 4) 현장실습 진행 전 사전교육(설명회) 필수 수강 후 진행해야 한다. **(미이수시 학점인정 불가)**
- 5) 현장실습 완료 시 현장실습록 등 관련 서류를 **5일 이내 학과사무실**로 제출 한다.
- 6) 학점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한다. **(대상자가 아닐 시 학점인정 안 됨)**

5. 장기 표준현장실습 실습기관 자격 및 의무 사항

- 가. 부산·울산·경남 소재지의 기업
- 나.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, 협회 및 단체 (규모나 형태에 제약은 없음)
- 다. 학생의 보건·위생·안전을 보장하며 실습에 필요한 시설, 설비,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
- 라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, 지도할 수 있는 기관 (**신청 시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세히 작성**)
- 마. 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 지도·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교육담당자 배정 (교육 및 안전 보호, 출석부, 평가 작성)
- 바. 현장실습 참여하는 학생의 **산재보험 가입**이 가능한 기관
-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(취득자 명부) 제출
 - 현장실습 시작일 기준 **5일 이내 해당 학과사무실**로 제출
- 사.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의 직무 관련 **교육 시간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운영**

6. 장기 표준현장실습 지원 내용

가. 지원내용

구분	표준 현장실습	비고
기업지원 실습비	월 단위 실습 기간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<예시> 209시간 X 10,030원 = 2,096,270원 ※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(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-832)	
학교 지원금	실습 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% 이상 우선 지급하고, 그 후 실습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 기관으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% 지급 <예시> 실습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2,097,270원의 월급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, 학교는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524,068원 월 실습비 지원금 지급이 불가 (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5호)	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 미해당
학점인정	표준현장실습 이수 시 학점 부여	
보험	산재보험(기업) / 상해보험(학교)	

7. 장기 표준현장실습 학점인정

<현장실습 과정별 편성내역>

구분	과정명		개설시기	실습기간	인정학점		이수구분	성적평가	수강신청
	국내	국외			단일	18학점			
장기 현장실습	현장실습Ⅲ (장기)	국외현장실습Ⅲ	학기 중	12주 이상	단일	18학점	전공선택	P(이수) NP(미이수)	신청 불요
					대체	18학점 이내	수강신청 교과목		신청 필요
	현장실습Ⅳ (워털루)	-	학기 중	12주 이상	단일	15학점	전공선택		신청 불요
					대체	15학점 이내	수강신청 교과목		신청 필요

※ 대체 교과목 관련 문의는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 또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현장실습 참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참여에 제한되는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, **학점 인정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사법단 및 본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**

가. 이번 표준현장실습 학점 포함하여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 학점(24학점)을 초과한 학생 참여 불가

나. 학과 회의를 통해 학생별 단일 및 대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결정

(붙임3-3)학점인정 동의서 및 회의록 작성 후 제출

다. 단일교과목은 15~18학점(18학점: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, 장기 표준현장실습 / 15학점: 워털루형 코업프로그램) 일괄 부여되며, 참가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하지 않는

것이 원칙으로 신청한 경우 수강취소 기간에 직접 수강 취소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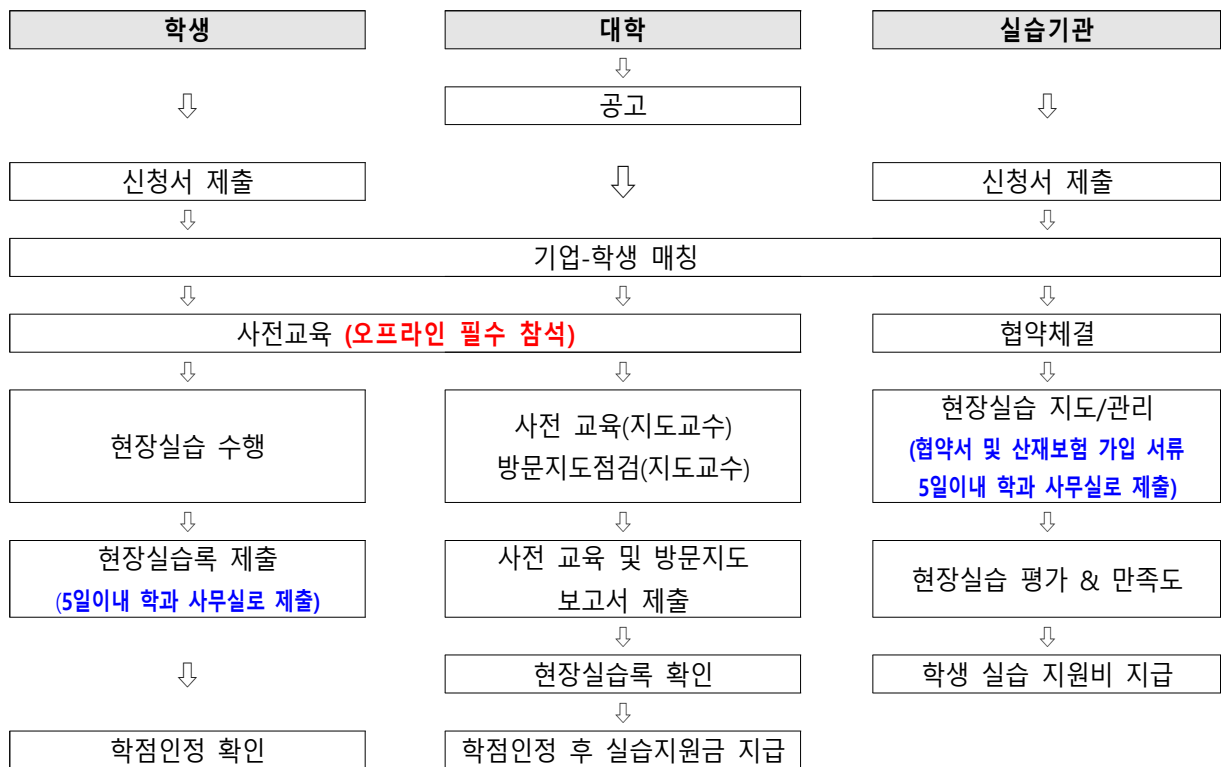
라. 대체교과목 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당해학기 수강신청 과목의 학점만큼 학점 취득
- 2) 실습생이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 교수의 사전 동의 및 승인 필수
- 3) 재수강, 교직, 각종 기사 등 국가자격 인정 필수 교과목 및 LMS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
- 4) 현장실습 기간 중 LMS 수강 신청 시,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직접 수강해야 함
- 5) 현장실습시간과 겹치는 실시간 강의(ZOOM 등)는 수강하지 않아도 무방함
- 6) 코로나 등으로 인해 학기 중 LMS로 변경된 교과목은 수강해야 함

마.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는 참여 제한될 수 있음

- 1) 학부(과)별 성적, 졸업 등 학사운영 일정과 맞지 않은 경우
- 2) 현장실습과 교과목 내용의 연관성 부족 등의 사유로 담당교수(지도교수 및 수업담당교수)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

8. 운영 절차



9. 표준현장실습 운영 원칙

가. 표준현장실습 사전 교육 및 방문지도 점검(지도교수)

- 1) 『현장실습 운영규정』 제7조(실습기관 관리 및 지도)에 의거, 실습생 모집완료 후 실습 전까지 지도교수 지정 필수
- 2) 실습전 사전교육 현장실습 유의사항 안내 및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하여야 함
(붙임3-9) 현장실습 사전교육 보고서 작성 후 제출
- 3) 실습중 지도교수 방문지도 실시 (붙임3-10) 장실습기관 방문지도 점검 보고서 작성 후 제출
 - 가)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의 작업환경, 근무상태 등을 점검
 - 나) 실습생과 실시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

나. 표준현장실습 원칙

- 1) 학생의 실제 실습일 기준(실제로 출석한 일수)으로 인정하며,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법정 공휴일, 휴가, 휴무 등은 현장실습 인정 일수에서 제외

- 2) 실습 기관 휴가, 결석 등으로 현장실습 실습일이 **20일 이상(1개월)**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일수만큼 연장하여 현장실습 진행
- 3)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
- 4)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 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, 일정한 요건 하에 재택 허용(실습 기간의 1/4 기간 가능)

10. 제출 서류

가. 참여 학생 대상

제출 시기	제출 자료	제출 기한	제출 부서
실습 전	(붙임3-1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(학생용) - [첨부1] 자기소개서 - [첨부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[첨부3] 신분증 및 통장 사본 (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한 장에 나오도록 제출) - [첨부4] 개인(신용) 정보처리 동의서- 보험 가입용	~ 2025.8.14.(목)	학과 사무실
	(붙임3-2) 장기현장실습 신청 전 체크리스트(학생용)		
	(붙임3-3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신청자 학점인정 동의서 - [첨부1] 학과 교수회의록(학과별 양식) : 단일, 대체 - [첨부2] 수강신청 확인서 : 대체	~ 2025.8.27.(수)	
실습 중	(붙임3-5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협약서	실습 시작 후 5일 이내	
	(붙임3-4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중도포기 사유서 ※ 중도 포기 시 해당 학기 전체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	현장실습 진행 후 중도 포기할 경우	
실습 후	(붙임3-6) 2025학년도 표준현장실습 실습록 - [첨부1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출근부 - [첨부2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일일 보고서 - [첨부3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결과보고서 - [첨부4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(기업용) - [첨부5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(기업용) - [첨부6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(학생용) - [첨부7]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설문조사(학생용)	실습 종료 후 5일 이내	

나. 참여 실습 기관 대상

제출 시기	제출 자료	제출 기한	제출 부서
실습 전	(붙임3-7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(실습기관용) - [첨부1]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- [첨부2]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용)	~ 2025.8.14.(목)	학과 사무실
실습 중	(붙임3-5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협약서 산재보험가입내역서	실습 시작 후 5일 이내	
실습 후	(붙임3-8) 2025학년도 장기 표준현장실습 교육지원비 신청서 - [첨부1] 급여명세서 - [첨부2] 이체확인증(입금내역서) - [첨부3] 통장사본(법인계좌) - [첨부4] 사업자등록증	실습 종료 후 5일 이내	

다. 지도 교수 대상 ※ 방문 사진 첨부 필수

제출 시기	제출 자료	비고	제출 부서
실습 중	(붙임3-9) 2025학년도 장기 표준 현장실습 사전교육 보고서	필수 제출 서류	학과 사무실
	(붙임3-10) 2025학년도 장기 표준 현장실습 방문지도 점검 보고서		
	2025학년도 장기 표준 현장실습 출장신청서		
	(붙임3-11) 2025학년도 장기 표준 현장실습 출장복명서	출장비 신청시 제출 (RISE 사업 추진단 참여학과 소속 교수님에 한하여 지급 가능)	

12. 표준현장실습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및 기타

가. 표준현장실습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

- 1)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한 원본을 단면으로 제출해야 함
- 2) 협약서상 실습기간, 실습지원비 등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
- 3) 기업의 운영 계획서 및 학생의 참여 신청서는 최대한 상세히 기술
- 4) 실습일지는 결근, 휴무, 휴가 등을 제외하고 1달 기준 최소 20일 이상 기록되어야 함
- 5) 실습일지는 실습 당일 작성하여 실습기관 담당자의 확인(서명 또는 날인)을 득해야 함

나. 기타

- 1)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- 2) 현장실습 참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학생 본인의 착오나 불찰로 인해 실습에 참여하더라도, 이에 따른 학점 인정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 및 사업단은 책임을 지지 않음
- 3) 현장실습 매칭(실습기관-실습생)은 학과주관으로 실시하므로 문의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

13. 문의처 :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(붙임2) 참여학과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

15. 운영기관

가. 주관 : 현장실습지원센터 / (051-200-6054) hinirkmj1@dau.ac.kr

나. 주최 :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단

2025. 7.
현장실습지원센터